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4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김문수 · 이개호
최혁진 · 이성윤 · 문정복
소병훈 · 조승래 · 안도걸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.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,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,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,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‘과반 이상’에서 ‘3분의 2 이상’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,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,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.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(안 제9조 및 제10조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노동계 등”을 “노동계에서 각각 1인을 포함하여”로, “11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과반수가”를 “3분의 2 이상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.	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 · 경제계 · 언론계 · 학계 및 <u>노동계 등</u>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<u>11인</u> 이내의 사람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노동계에서 각각 1인을 포함하여</u> ----- ----- ----- <u>15인</u> ----- ----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	제10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명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· ③ (생략)

<신 설>

④ ~ ⑥ (생략)

--3분의 2 이상이-----
-----.
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⑤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⑥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